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2. 9 (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우진 의원 외 6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채우진 위원 외 6명
- 제안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 (의안번호 : 21-141)

2.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제안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3조)
-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안 제4조~제5조)
- 제안 처리상황의 공개, 공모제안의 모집(안 제6조~제7조)
-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8조~제16조)
- 제안의 심사기준 및 채택제안의 결정 등(안 제17조~제21조)
- 공무원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창의마일리지제 시상 등
(안 제22조~제27조)

- 제안자 실비보상 및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8~3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표현 재정비

4.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국민 제안 규정」
- 「공무원 제안 규정」

5.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채우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제안 제출 및 접수 절차 개선과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 2007. 7. 26일 마포구는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구정 발전에 관한 구민의 제안을 접수·관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국민 제안은 주로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제안은 내부 행정 전산망(서울행정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 되고 있음.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140건, 2020년 102건, 2021년 5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최종 채택된 건은 2019년 4건, 2020년 11건, 2021년 6건으로 조사되었음. 매년 제안 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제안 접수된 내용도 민원사항, 단순건의, 기시행 되는 사업 등이 많음.

[표1]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현황(2017년~2021년)

연도	계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접수	채택	채택률	접수	채택	채택률	접수	채택	채택률
2017	346	3	0.9%	133	3	2.3%	213	0	0.0%
2018	459	7	1.5%	135	2	1.5%	324	5	1.5%
2019	140	4	2.9%	67	2	3.0%	73	2	2.7%
2020	102	11	10.8%	33	3	9.1%	69	8	11.6%
2021 (9.30.기준)	57	6	10.5%	35	4	11.4%	22	2	9.1%

- 한편, 제안제도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대부분의 자치구가 「국민 제안 규정」 과 「공무원 제안 규정」 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개정일: 2012.6.7.)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화가 필요함.

[표2] 25개 자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기준: 2021.10.13.)

자치구	제안(구민·공무원)		공무원 창안		비고
	조례	규칙	조례	규칙	
종로구	○ (2019.7.12.)				
중구	○ (2018.12.28.)	○ (2018.12.28.)		○ (2020.9.3.)	
용산구				○ (2020.12.31.)	
성동구	○ (2012.11.23.)	○ (2015.5.21.)			위원:공무원만
광진구	○ (2018.9.21.)	○ (2014.9.16.)			
동대문구	○ (2017.6.22.)	○ (2009.9.17.)			
중랑구	○ (2018.9.20.)	○ (2014.12.26.)		○ (2020.1.9.)	
성북구	○ (2020.12.31.)				
강북구	○ (2019.4.5.)	○ (2014.12.31.)			
도봉구	○ (2020.5.7.)	○ (2009.2.11.)			위원: 공무원만
노원구	○ (2020.5.21.)	○ (2011.6.23.)			
은평구	○ (2020. 1. 2.)	○ (2010.7. 1.)			
서대문구	○ (2020. 4.16.)	○ (2018.7.4.)		○ (2020.6.3.)	
마포구	○ (2012. 6. 7.)				위원: 공무원만
양천구	○ (2016.12.22.)			○ (2020.9.17.)	
강서구	○ (2020. 5.19.)	○ (2010.12.8.)			
구로구	○ (2017.11.16.)			○ (2011.12.29.)	위원:공무원만
금천구	○ (2019.10.10.)	○ (2019.10.10.)			
영등포구	○ (2019.10.31.)	○ (2019.12.26.)		○ (2019.12.26.)	
동작구	○ (2015.11.12.)				
관악구	○ (2008.8.1.)	○ (2008.9.4.)			
서초구	○ (2021.9.23.)	○ (2021.9.23.)		○ (2021.6.3.)	
강남구	○ (2018.6.1.)	○ (2021.9.17.)			위원: 공무원만
송파구	○ (2018.12.31.)	○ (2019.5.16.)		○ (2019.5.16.)	위원: 공무원만
강동구	○ (2020.12.23.)	○ (2020.12.30.)		○ (2015.2.4.)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는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 제1조¹⁾ 및 제2조²⁾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제안의 목적과 정의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4조)에서 구민제안의 제출시기 및 방법, 공동제안인 경우 기여도 표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제안자에게 보완요청 요구 및 미보완시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 내용의 처리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이송처리에 관한 규정과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제안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

○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구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
- 1)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실시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모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날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 (안 제8조~제16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구민제안에 대한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3항³⁾에서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위원회의 구성에 반영하였음.
- (안 제17조~제21조)에는 제안 심사기준 및 채택여부의 결정,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규정, 채택제안의 등급 등에 관한 내용임.
- (안 제22조~제27조)에는 공무원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창의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내용임.
- (안 제28조~제33조)에는 제안자에 대한 실비보상 및 제안 관리,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내용임. 안 제32조제3항에서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표현을 재정비 하는 내용임.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제안 접수 및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제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매년 제안 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양질의 제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표3] 2021년 채택제안 주요 내용(2021.9.기준)

연번	제안종류	제안개요	비고
1	국민제안	재활용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배출자에게 포인트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분리 배출함(기계)을 설치하여 재활용 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	노력제안
2	국민제안	여름철 우기 시 주민센터에 한시적으로 무료 우산수리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자원 낭비 방지 및 쓰레기 감소로 환경 보호	장려상
3	국민제안	① 동별 제설블럭 설정, 블록 담당 및 지원인력 지정, 상시 비상 연락체계 유지 ②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함 (염화칼슘) 배치 ③ 골목, 계단 등 뿌리기가 어려운 지역에 다양한 제설장비 활용하여 제설	노력제안
4	국민제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위축된 일상생활이 지속되어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공공장소에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형 자전거를 설치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환경도 보호	노력제안
5	직원제안	직원 간 업무 소통 창구가 전화와 행정메일만 존재하는 마포구는 자체 메신저를 사용하는 타구와 비교하여 직원 간 업무적 소통이 어려우므로 직원 간 부재여부, 통화 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를 도입하여 소통 기능을 향상	노력제안
6	직원제안	현행 전자문서 시스템은 '비교'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전과 수정 후 문서만 보여줄 뿐, 수정한 부분을 표시해주지 않아 찾기가 어려우며 잦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므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정한 부분이 빨간색 등 다른 색으로 표기되도록 개선	노력제안

○ 구민들의 구정참여 및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구민제안 워크숍, 집중테마별 창의제안동아리 운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제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온라인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시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최근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여, 622건 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20건에 대해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했음. 선정된 대표적인 사례인 “우리동네 외로움 대피소”는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외로움을 피할 곳을 만들자는 내용임.

대일신문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005면 자치행정

1인가구 대책, 시민들 나섰다

서울시 아이디어 공모 622건 참여·높은 관심

1인가구 대책 마련에 시민들이 나섰다. 속도가 더딘 관련 공공 주도 1인가구 정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투표하는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622건 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20건에 대해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했다.

1인가구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우리동네 외로움 대피소가

대표적이다.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외로움을 피할 곳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대피소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정신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안자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봐 전문 상담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상담만으로는 외로움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공간이 있다면 굳이 상담사가 아니어도 외로운 사람끼리 공감, 친구관계 형성을 통해 고립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숙터부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고해성사식 혹은 암막블라인드 방식 등으로 혼자 사는 시민이 느끼는 감정적 공허함, 결핍, 고민거리, 마음속 응어리를 속 터놓고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아

이더다. 혼자 사는 사람이 겪는 일상 문제에 주목한 제안도 있다. ‘1인가구 생활문제 해결사’다. 혼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생활문제를 근거리에 서 이른바 ‘홍반장’이 해결해 주는 생활 서비스를 말한다. 무상 혹은 통상 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공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안전,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불편 해소도 과제로 떠올랐다. 편의점 안심배달서비스는 내 집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택배의 분실·도난을 막기위한 아이디어다.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을 연계해 배달음식이나 택배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집을 비웠을 때 등거나 주요 택배,



다. 출장 등 급한 응무로 집을 비우는 경우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체 가구의 35.9%가 1인가구로 나타나는 등 관련 정책이 시급하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재 1인가구 특별대책만을 운영하고 있다. 1인가구지원조례는 2016년에 이미 만들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1인가구 정책은 부서 하나를 만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3가구 중 하나가 1인가구인 만큼 행정 패러다임 자체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가구 문제를 청년 문제와 동일시 하지만 고령층이 절반을 차지하고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등 단기간에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간 정책에서 소외됐던 중장년 1인가구 지원대책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brother@naeil.com